



제316회 정례회

2012.12.12.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2년 12월 4일
- 회부일자 : 2012년 12월 6일

3. 제안이유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그리고 기관별·직급별 정원 신설과 한시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종류별 책정기준 신설(안 제3조제1항, 별표 1)

1) 일반직 53%이상, 기능직 46.5%이내, 별정직 0.5%이내

※ 현행 교육규칙의 종류별 책정 정원 비율 적용

나. 지방공무원 직급별 책정기준 신설(안 제3조제2항, 별표 2)

1) 일반직: 4급이상 2%이내, 5급 8.5%이내, 6급 33%이내, 7급 44%이내, 8·9급 12.5%이상

2) 기능직: 6급 6%이내, 7급 15%이내, 8급 26%이내, 9급 53%이상

3) 연구직: 연구사 100%

4) 별정직: 5급 31%이내, 6급 16%이내, 7급 47%이내, 8급 6%이상

※ 일반직과 기능직은 현행 교과부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직급별 책정기준을, 연구직과 별정직은 현행 교육규칙 직급별 책정 정원 비율을 적용

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신설(안 제4조, 별표 3)

1) 총정원: 2,898명(정무직1, 일반직1,553, 기능직1,324, 연구직7, 별정직13)

2) 4급 이상: 일반직 22명(도의회사무처1, 본청 및 직속20, 지역교육청1)

※ 입법예고 기간 중 교과부로부터 승인(지방교육자치과-5798, 2012.10.17.)된 일반직 4급 정원 1명을 추가하고 5급 이하 정원을 감원함

3) 5급 이하: 일반직 1,531명, 기능직 1,324명, 연구직 7명, 별정직 13명

※ 총정원은 현행 교육규칙과 동일하며, 5급 이하의 정원은 조례로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단위기관별로 교육규칙으로 정함

라. 한시정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별표 4)

1) 한시정원 5명: 4급2, 5급1, 6급1, 7급1

※ 현행 교육규칙과 동일

##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종전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던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책정기준 및 한시정원과 교육규칙으로 정하던 단위기관별 직급의 정원 중 4급이상 정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7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원 책정기준) ①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한시정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한시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 설>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 반 직	기 능 직	별정직
비 율	53%이상	46.5%이내	0.5%이내

※ 연구직의 정원은 일반직 정원에 포함한다.

[별표 2] <신 설>

###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 1. 일반직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9급
비 율	2%이내	8.5%이내	33%이내	44%이내	12.5%이상

#### 2. 기능직

구 분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비 율	6%이내	15%이내	26%이내	53%이상

#### 3. 연구직

구 분	연구관	연구사
비 율	-	100%

#### 4. 별정직

구 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비 율	31%이내	16%이내	47%이내	6%이상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 각급학교
<b>총계</b>	<b>2,898</b>			-	
<b>정무직 계</b>	<b>1</b>		<b>1</b>		
교육감	1		1		
<b>일반직 계</b>	<b>1,553</b>			-	
3급	1		1		
3·4급	4		4		
4급	17	1	15	1	
5급이하 소계	1,531			-	
<b>기능직 계</b>	<b>1,324</b>			-	
6급이하 소계	1,324			-	
<b>연구직 계</b>	<b>7</b>			-	
연구사 소계	7			-	
<b>별정직 계</b>	<b>13</b>			-	
5급이하 소계	13			-	



[별표 4] <신 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한시정원표(제5조 관련)

단위기관	종류	직렬	직급	정원	존속기한	비고
본청	일반직	행정	4급	1	2015.2.28.	방과후학교지원단
				1	2015.8.31.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교육행정	5급	1		
			6급	1		
			7급	1		
합계				5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7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u>」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 ----- ----- -----.</p>
<p>제3조 삭제</p>	<p><u>제3조(정원 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u> <u>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u></p>
<p>제4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본청,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p><u>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u></p>
<p>제5조(한시정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한시정원은 5명으로 하고,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p>제5조(한시정원) 「<u>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u>」 제18조제4항 ----- ----- <u>별표 4와 같다.</u></p>

# 관 계 법 령 발 취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1] [대통령령 제23645호, 2012.2.29, 전부개정]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확인 결과를 기관별·기구별·직렬별·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2.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제16조(별정직 정원)** ① 별정직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별정직 정원은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교육감이 각 직무분야별·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③ 교육감은 별정직 4급 상당 이상의 정원을 책정(4급 상당 이상의 계급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별정직 정원책정사유 및 임용자격기준을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한시정원)**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에 소멸된다.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하여 조정할 수 없다.

④ 한시정원과 직급별 정원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제19조(직급별 정원 책정)** ①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일반직 4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정원 감축 및 직렬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

②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5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직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④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